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상호 호혜적인 한·미관계에 걸맞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에서 독일, 일본의 협정과 같은 수준의 평등한 협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양국의 당국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를 낭독하겠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국이 독일, 일본 등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다.

최근 매향리의 미군사격장 피해 및 한강에의 독극물 유출사건 등은 단순히 피해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생존권의 침해 그리고 우리 영토의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문제를 촉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여러 차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 동안 이를 극력 지연, 회피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호혜정신에 엇각한 대등한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독일과 미국, 일본과 미국이 맺은 주둔군지위협정과 같은 대등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성실한 협상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상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결과심사를 보고드립니다.

### (13) 위원장대리 조용규

이상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야위원의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의 앞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8월2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에 임하는 외교통상부에 큰 힘을 몰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제4절 시민단체의 입장

### 1. 환경운동연합

####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협상에 즈음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지탱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불평등한 SOFA'라는 것을 확인하고 2000년 8월 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간 개정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8년 현재 90여곳의 주한미군 기지와 3만 7천여명의 미군에게서 발생하는 각종범죄와 환경파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3년 동안이나 매항리 미공군 철폐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강에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고, 오산비행장에서는 기름이 유출되는가 하면, 미군이 SOFA개정 협상안으로 내놓은 안은 한국의 사법권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주권국가인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미군의 태도는 도저히 우호국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고 양국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불평등한 SOFA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불평등한 SOFA개정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한미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SOFA 조항,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SOFA에 미군물자에 대한 검역조항이 신설되어 검역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에 대해 한국의 환경법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미군의 환경오염·생태계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미군기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당국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 관려자료제출의무, 책임자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SOFA의 '시설과 구역의 규정(제32조 제1항)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군의 환경침해에 대한 한국정부 및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당국은 미군기지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 SOFA의 '기지반환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면제'규정(제4조 제1항)이 악용될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환경침해 등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에 미군당국이 협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해 '미군에 대한 재판서류 송달·법정출석의무, 판결집행절차에 대한 미군당국의 협조의무, 미군급여에 대한 강제집행보상'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일곱째, 배상금 분담율에 관한 규정(제23조 제5항(마)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측 당국이 피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미군의 기지관리권 규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화학무기 등 위험한 무기의 반입과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 및 사용에 관하여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미군당국은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살상용 무기를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2000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실 박항주 간사 / 김정수 국(실)장

## 2. 한국여성단체

###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여성계 입장

-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마침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다. 1995년 6월, 충무로 지하철 내 미군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된지 4년여가 지나서 열리는 협상이다. 오랜 개정요구와 기다림 끝에 열리는 협상인 만큼 기대가 크다. 이번 협상이 진실로 한국민의 인권, 재산, 안전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한미 양국의 우정어린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개정되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이번 협상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한미 양 정부에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는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형사재판권은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국제법상 가장 고유한 국가의 권한이다. 그런데 현재 행정협정은 이런 고유 권리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한국이 전

속적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라도 미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1차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호의적 고려'조항을 두어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율을 연평균 3-4%에 머물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인신구속의 제한으로 한국의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가 없다가,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상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도 그 예들이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행정협정은 명백히 국제인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미군들의 크고 작은 범죄로 기지주변의 여성들과 주민들이 성희롱, 폭행, 강간, 살인, 사고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지만 많은 경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조항들 때문이다. 빈곤으로 적절한 대안이 없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도, 많은 지역민들도 쉽게 무시하고 있다. 한미 양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의 가장 고유 권한인 형사재판권을 전면 보장하여 이 땅의 여성들과 약자들과 주민들이 미군의 불법적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1995년 미국과 독일은 미군이 독일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협정에 첨가했다. 매향리 폭격장 주민의 고통과 미군당국의 독극물 무단방출 사건을 교훈으로 미군당국이 한국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또는 환경정화의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의무조항도 반드시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미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향리와 같이 실탄사격연습, 폭격연습시의 저공비행과 심각한 소음,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팀스피리트와 같은 중대한 군사활동의 환경적 영향,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지에서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고도의 발암물질(오일, 솔벤트, 중금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의 한 기지가 반환된 후 만들어진 규정에 '이곳에는 20년동안 인간이 살아서는 안되며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고 한다. 기지오염이 국민건강에 매우 위협적임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미군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미군당국에 대한 통관, 관세 상의 특권제한과 세관검사와 검역강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는 여성계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2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마이클에 의해 윤금씨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군관리의 입회가 없는 한 미군에 대한 예비수사나 재판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한국 수사당국은 초동수사나 사법부의 재판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뿐만 아니라 1988년 발생한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사건, 1995년 발생한 충무로 지하철 미군병사 성추행 사건, 최근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강간당하는 등 미군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더욱 기막히는 상황은 작년 1월 동두천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 신차금씨, 기지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센터(새움터)에서 일하던 중 9월에 살해당한 이정숙씨, 2000년 2월 이태원 미군전용클럽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성희씨, 3월에 의정부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68세의 기지촌 여성 서정만씨 등 작년과 올해에 걸쳐 4명의 여성이 기지촌에서 살해당했다. 이 사건들 모두 미군이 범인이거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실제로 검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다.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사대(CID)의 수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미군의 알리바이에도 몇가지 허점이 발견되었지만 미군과 한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미군 용의자를 본 목격자도 있었고 사진 몽타주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미해결된 채 미군에 빠져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기지촌 여성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군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형사 관할권 문제의 개정이 시급하다. 강력범의 경우 한국

인이 피해자라면 미군 피의자 인도 시기를 기소 이전에라도 인도받아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은 더 이상 주권 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이 저질러 온 인권유린에 대한 방지대책, 주한미군을 위한 특수성산업지역인 기지촌을 통해 퇴폐적인 성문화가 확산되고 성매매가 일상화되어 온 것에 대한 근절대책, 혼혈아동 양육문제, 기지반환에 따른 기지촌 여성의 자활대책, 기지촌 여성에 대한 학대 및 살해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혼혈아동 문제도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 미·독일간의 행정협정에는 미군당국이 미군이 낳은 혼혈아들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데 협력하고 혼혈아를 가진 독일여성에게 미군아버지들이 부양책임을 지도록 권고하고, 이 아버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82년 베트남-미국 혼혈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혈아 이민법을 만든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혼혈아 문제는 취급치 않으며 1951-198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만 해당되도록 했다. 이들 혼혈아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서 혼혈아들의 인권보호조치도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제 8월 2일부터 만 4년만에 재개되는 SOFA 협상에서 여성인권 보호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기지촌 여성들과 성추행 당한 여성들과 혼혈아동들을 위해 여성인권보호조항이 SOFA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1.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한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주한미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주한미군에 의한 성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미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직업재활을 위해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아버지의 부양책임을 분명히 하고, 혼혈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7. 기지 반환시 기지 전용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2000년 8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움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3. 녹색연합

#### 1) 보도자료 2000년 5월 19일

- 미군이 매향리에서 폭격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 -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우성면 매향리 미군 폭격장 인근에서 기형아가 출산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큰머리 기형아는 원전·핵폐기장 부근에서 과거 출산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이는 미군 사격장으로 쓰이는 매향리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우리는 한국의 국방부가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적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적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군과 국방부가 보이는 현장조사는 너무나 미군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한 형식적 조사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해결책 없이 깨진 유리창을 갈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번 기형아 사건은 1966년 주둔군지휘협정(SOFA)을 체결된 이후 매향리가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당연하게 파괴된 결과이며, 방사능에 의한 오염 가능성과 소음 및 폭격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질병의 단적인 사례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군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지역주민들께서 나타난 기형아 출산과 같은 많은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방사능에 또는 소음에 의해서 환경질병(기형아 출산)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정밀 건강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생태계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환경 질병에서 나타나듯이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갯벌에 있는 것은 포탄과 전쟁의 잔재뿐이며, 이곳에 갯벌 생태계와 자연생물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의 자연생태계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에 환경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생태계 환경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군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환경복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폭격장 1km<sup>2</sup> 복원하는 비용으로 16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1996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이곳을 복원하는 일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군은 생태계 복원 비용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예산을 미국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관·군 합동 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우리는 매항리 문제를 50년간 조사하고 정부에 문제해결을 10여년동안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미군과 국방부의 지역 조사는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민·관·군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조사활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와 정부 그리고 미군이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거짓과 속임으로 미군의 이익만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계속해서 이러한 자국민의 인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반 주권국가적 행위가 진행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한국의 국군역사상, 국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녹색연합 매항리 대책반 이유진 간사

#### 2) 성명서 2000년 7월 22일

#### 미군의 유해화학물질 한강 방류사건에 대한 공개요구서

수신 : 주한 미국 대사 Stephen W. Bosworth

주한 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하 소속 미군 장병들이 생소한 아시아의 나라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함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1996년 이후 미군기지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녹색연합은 지난 7월 13일, 용산 주한미군 제8군기지 내에

서 올해 2월 9일에 일어난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세계인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양심들 특히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책임자의 처벌 및 미군의 재발방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 기관에서는 한국국민의 분노와 전세계적인 비난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 기관은 녹색연합의 사건개요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7월 14일 "미군에 의한 한강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출사건"을 공식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발표는 문제해결의 노력보다는 한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을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환경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슈미트 공보실장대리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은 "단 75.7ℓ (20갤런)가 용산기지내의 하수도를 통해 단 한차례 폐기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녹색연합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에 우선 책임자 처벌로서는 지시자인 'Mr. Mcfarland, Albert L'과 '물로 희석할 수 있다'고 말한 발언자, 그리고 '관련자가 보고한 진술서를 무시한 행정 책임자'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 제8군 제34사령부의 조사요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물로 희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로 보기에 그 내용이 조직적인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연히 해임

되어야 하며,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서 한국의 환경과 인권관련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환경조사와 복원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2일부터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당연히 환경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미군 기지내 환경 조사의 의무와 한국정부의 조사권 행사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부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한 바램으로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녹색연합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공개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와 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녹색연합은 미군 병사들의 안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영신, 박경조, 이병철

### 3) 성명서 2000년 7월 25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미군측은 조사활동을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회피로 이용하지 말라.

○ 미8군 사령관이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하여 (7. 24, 미8군사령관의 입장표

명에서)

▶ 녹색연합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조사의 책임자를 베리 베이츠 소장(미육군 관련 시설의 책임자이며 제19전역 지원 사령부 사령관)으로 격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녹색연합의 발표 이후 단 한차례의 시인 발표이후 보여준 미군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보다는 진실회피와 여론무마를 위한 형식적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미8군 사령관이 밝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직접 방류자, 방류지시자 등등) 및 관련시설의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당국은 자칫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명명백백하게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녹색연합은 미군 당국만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 방류된 포름알데히드는 영내 하수처리장에서 1차 및 2차 폐수처리를 거쳐, 난지도 하수 처리장에서 최종 종말처리 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7. 14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 조사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 녹색연합은 미8군 용산기지 내의 각종 환경기초시설 현황과 그 운영내역 및 영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처리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직접 시찰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4일 공보실장대리인 슈미트 소령의 발표에서 "포름알데히드 및 폐수는 영내 하수처리장에서 1차 및 2차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난지도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인 종말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한미군기지내에 오수관과 폐수관이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통합해 하수관을 통해 직접 방류하며, 오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9일 미군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ild. 5498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하수구를 통해 버림에 따라 미군측이 주장하는 1차와 2차의 오폐수처리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월초에 방류한 미8군 영안실 Build 5498의 싱크대 하수구가 과연 오폐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있는지 하수관거 도면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미군측이 밝힌 영내 하수처리장의 규모와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영내에서 취급하고 유해화학물질은 처리량과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방류된 포름알데히드는 폐수처리 및 회석과정의 결과로서 환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데 대해 (7. 14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 조사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 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특성을 규정하고 고독성(高毒性)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액체와 기체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하수구에 버리면 그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퍼진다. 물론 하수구가 연결된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체에 폭로되면 심각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회석되지만 독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포름알데히드를 회석과정을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당시 집행자의 진술서를 통해 5월 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7월 10일 "물에 회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통보해 온 것 같은 의견을 기자브리핑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로 회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 단 한차례의 방류사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물에 회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하수구를 통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녹색연합은 미군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우선 미군당국, 한국정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미8군의 환경기초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미군측이 주장하는 포름알데히드를 회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사건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다른 주한미군기지에서 유사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 조사 여부, 관계자 처벌 등 제반 조치의 결과와 최종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 4. SOFA개정국민행동

### 1) SOFA 개정방향

미군기지는 현재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땅이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미군기지이다. 미군범죄는 미군이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사회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이다. 둘째,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립이다. 셋째,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 체결과 기지사용료 징수이다. 넷째,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립이다. 다섯째, 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이자 '요구'이다.

## 2) 강원도 폐유방출사건에 대한 논평 2000. 09. 25

“은 산천이 미군에 의해 썩어가고 있다. 한미당국은 조속한 협상재개로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SOFA를 전면 개정하라!”

우리는 불평등한 SOFA로 인해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미군의 폭력으로부터 우리국민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환경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을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어렵사리 열린 지난 8차 협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속된 협상재개 시일인 2개월이 다 지나도록 협상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한미당국의 협상자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미군에 의한 강원도 무단기름유출사건은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은 이번 강원도 원주 무단기름방출사건은 이미 지난 6월 보수공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실이 전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묵인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은갖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이를 은폐시켜왔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은천하에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부정하거나 또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뻔뻔스럽게 일관해왔다. 지난 한강독극물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은폐, 묵인해오던 독극물 방류사

건이 은 천하에 공개되자 “물에 희석되니까 괜찮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온 사실은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억울한 누군가의 일도 아니다. 주한미군이 발을 들인 그 날부터 지금까지 50년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이며, 앞으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 피해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는 없다.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실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미국에게 큰소리로 SOFA 환경조항신설등의 전면개정요구를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자세를 온 국민은 바라고 있다.

첫째, 미군은 섬강 폐유방출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미군은 환경오염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한미당국은 전국미군기지에 대한 민관환경오염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라!

넷째, 한미당국은 조속한 협상재개로 불평등한 SOFA를 전면개정하라!

## 3)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요구안 2000. 09. 21

### (1)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 ①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
- ②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 ③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 폐지

### (2)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

- ①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 ②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③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
- ④ 환경조항 신설(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 ⑤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 ⑥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 ⑦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 ⑧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조항의 신설

### (3) 개정 요구안

- 형사관할권 적용 대상 범위의 축소
- 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삭제
-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최소한 피의자 공소시점으로 조정
-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 공무의 최종판단을 한국법원에 일임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불필요한 기지 즉각 반환
- 환경 관련 규정 신설
- 간접고용제로 전환
- 고용안정 및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
- 비세출 자담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 미군 농산물의 검역권 확보
- 여성과 아동 인권보호 조항의 신설
-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 주선과 친부 양육비 부담에 관련한 조치
-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 신설
-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 남녀관계, 지역정서와 문화에 대한 미군교육 의무화
- 모성 보호를 위한 환경관련 조항 신설

### (4) 개정의 구체적 내용

#### [형 사]

- ▶ 형사관할권 적용 대상 범위의 축소 (제22조 1항가 / 제22조 3항 가)
- ① 현행 협정에서 적용 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 (나토협정과 미일협정에 준함)
- ② 형사관할권 인적범위에서 초청계약자 배제 (제15조 8항)
- ③ 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삭제 (제22조 3항 다) : 합의의사록에서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삭제
- ④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최소한 피의자 공소시점으로 조정 (제22조 5항 다) : 피의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절차가 끝난 뒤에야 신병인도 후 구속할 수 있던 것을 공소시점으로 앞당기고, 중범인 경우에는 공소 전에도 가능케 개정
- ▶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본협정 제22조 9항 / 합의의사록)
- ① 미국 대표의 입회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 조항 삭제
- ②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증거채택 불가능 조항 삭제
- ③ 미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④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⑤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사법부에 대한 불신
- ▶ 공무의 최종판단을 한국법원에 일임 (양해사항 제22조 3항 가-3-가)

- ①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특정 미군장성으로 한정
- ② 공무의 최종판단은 한국법원에 일임한다. (나토 협정과 미일 협정에 준함)

**[민 사]**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①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② 한-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부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토록 함.

▶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①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
- ② 판결 후 집행절차도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명시.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및 치료비 선 지급 조항 신설

**[시설과 구역]**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①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은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해야 한다.
- ②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 ③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한을 미일협정에 준하여 10년 정도로 제한한다.
- ④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 반환시 복잡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즉각 반환토록 한다.

⑤ 미군시설과 구역안에서 위험한 무기의 반입이나 군사작전, 그 외 한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한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⑥ 군사목적에 반하는 건축행위시에는 접수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명시한다.

**[환 경]**

▶ 환경 관련 규정 신설

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부담하도록 한다.

②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 ㉠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의무 ㉢ 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의무 ㉣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의무 ㉤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 손해배상청구에의 협조의무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③ 환경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 기지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환경법규가 적용되도록 함.

④ 환경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절차조항을 신설한다 : 환경관련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함.

**[노 무]**

▶ 간접고용제로 전환 (제17조 제1항, 제2항) : 미일협정, 나토협정에 준함 고용 안정 및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①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② 현행 70일의 냉각기간을 최소한 45일 이내로 축소

- ③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 ④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통관, 관세, 과세 등]**

▶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

- ①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 ②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불법처분'의 통제를 강화하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비자격자'의 이용 제한.
- ③ 특혜납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함.
- ④ 비세출자금기관의 과세특혜를 납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슬롯머신 등)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 ①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내 미군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② 한국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 신설]**

- ①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 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 의무화한다.
- ②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이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관련하여 양국의 관례 중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 ③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 ④ 혼혈 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하며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 ⑤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로 정기적인 성병/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기지 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킨다.
- ⑦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매춘금지를 명문화한다.
- ⑧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특별법), 남녀관계, 지역정서와 문화(gender relation)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5.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 한·미 양 정부에 소파(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2000년 8월 1일)**

지금 온 국민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양 정부 사이의 소파 개정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소파 전면 개정이 한국민의 한결 같은 요구임을 똑똑히 알고 이번 협상에서 전면적 개정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한미 소파는 모든 조항이 한국민의 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협정이다. 따라서 소파 몇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결코 짓밟힌 한국의 자존과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형사관할권에서의 사법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미군기지 시설과 기지 사용 문제, 환경오염 문제, 노무자 처우 문제, 통관·관세 및 조세상의 특혜 문제 등 모든 분야의 전면적인 개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소파 협상에서는 우선 미군기지 시설과 기지 사용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미군이 한국의 영토를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국 내 모든 미군의 시설과 기지에 대해 그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임대료 등을 명시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설과 기지에 대한 한국의 관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매향리 폭격장과 같은 반인륜적인 폭격이 자행되는 기지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미군기지는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미군 범죄피의자의 신병이 기소단계부터 한국의 사법당국에 넘겨져야 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한국의 법을 어긴 미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미군은 시설과 기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환경오염이 있으면 피해배상은 물론 정화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법에 따라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미군에게 부여된 통관·관세 및 조세상의 특혜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호혜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촉구한다.

한국 정부가 한국민의 자존과 주권을 되찾고 지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소파 개정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의 협상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파를 전면 개정시키고 우리의 자존과 주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이전처럼 아무런 성의도

없이 시간만 끌면서 협상을 파탄으로 이끈다면 온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민족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대미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온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미 양국 정부에 시대착오적인 소파의 전면 개정에서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 8차 SOFA 개정협상 재개에 따른 성명서(2000. 8. 2)

### - SOFA 개정협상 재개에 부쳐 -

오늘(2일)부터 SOFA 개정협상이 재개된다. 4년여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은 온국민의 관심속에 협상결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벌써부터 회의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한-미 양국은 4월 말 개정협상을 재개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되더니 매향리 미공군폭격장 오폭사고,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 등 잇따른 사건, 사고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드세지자 마지못해 수락하는 식으로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지난 5월 31일 한국측에 전달한 SOFA 개정안을 보면 과연 협상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케하고 있다. 개정대상을 형사관할권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신변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사실상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겠다는 내용이어서 '개정'이 아닌 '개약'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분명한 것은 미군범죄자에 대한 신변인도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이다. 이는 타국의 SOFA와 비교해 볼 때도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따라서, 이에 관해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으며, 형사관할권 전 조항 및 SOFA 본협정과 부속

문서의 전면개정, 나아가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으로까지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그간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미군주둔 반세기, 자신들이 한국민에게 가했던 술한 범죄와 악행들에 대해 사죄하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정부 역시 그간의 굴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들의 바램대로 이번 협상에서 SOFA의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처음 주둔하던 해방시기나, SOFA가 체결되던 60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의 침략위협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미국에 대한 혈맹관계를 내세우고, 사실상 속국이기를 자처하던 때는 지났다.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북의 침략 위협이라는 것도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현실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을 때만이 한미관계도 그에 맞게 발전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걸의 냉전적 사고에 젖어 종전의 입장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견잡을 수 없는 반미감정의 열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전제로 형사관할권은 물론이고 민사, 시설과 구역, 노무, 환경 등 SOFA 전 조항을 개정하라!
- 미국정부는 제출한 SOFA 협상안을 폐기하고 미군주둔 반세기, 술한 악행들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반성하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라!
-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SOFA가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당당하게 나서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문 대 글

### 3) 8차 SOF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른 성명서(2000. 8. 3)

- 기만적인 SOFA 개정협상 규탄한다! -

8월 2-3일 양일간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된 8차 SOFA 개정협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미 양국은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무슨 커다란 성과인양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만적이기 짝이 없다.

우선, 양측은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발표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얼 뜻하는 지는 지난 5월 31일 미국측이 전달한 협상시안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소시 신병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 운운하며 그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에 관해 어떤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측에서 요구한 환경, 노무, 검역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정도로만 나와있다. 특히, 환경조항의 경우 최근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으로 인해 관련 조항의 신설문제가 매우 시급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단지 한국측이 '제안'하고 양측은 다음 협상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국민감정을 무시한 미국측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애초에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며 그 어디에도 한국측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SOFA 협상에 즈음해 일국의 대통령이 반미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미국측에 수세적으로 나올 때부터 이미 예상

된 결과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면서 향후 진행될 9차 협상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조항의 신설 및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민사, 시설과 구역, 노무, 검역 등 SOFA 전 조항의 전면개정, 그리고 앞서 합의한 신병인도의 단서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만이 예상되는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문 대 골

## 6. 주한미군철폐운동본부

### 1)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서(2000. 9. 8)

우리는 미군의 한국 국민과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분노한다.

지난 7월 1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녹색연합은 용산 미8군 영내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다량의 독극물이 미군에 의하여 하강에 방류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 즉각 중단과 주둔군 최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요구하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지난 7월 24일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은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사과표명을 통하여 "명예를 걸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시정조치(appropriate corrective action)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허나, 지금 우리에게 보여진 미군의 모습은 역시 기만적이며, 너무나 뻔뻔하게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환경범죄를 은폐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한미군이 한강에 방류한 포름알데히드의 위해성을 입증

하는 내부 문서를 통하여 주한미군 스스로 포름알데히드의 독성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이미 그들의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문서는 '물질사요안전지침서'라는 미군측이 그동안 공식입장을 통해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완전 거짓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미군은 영안실 소장 미스터 폴리 제기한 액체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파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스터 맥팔런은 영안실장으 합리적인 조치를 무시하고 액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백지화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가 바로 2월 9일 무단방류를 강압적으로 지시한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방류를 지시한 부소장에 대해 고작 45일 감봉처분에 그친 것으로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한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인 군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을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일종의 인종차별적 보복조치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빼앗아 가고 있다.

미군은 결국 자국 국민의 이익을 직면서 한국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독극물 방류를 직접 지시한 맥팔런을 보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군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당국의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과년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1. 미국정부는 그동안 포름알데히드가 아무런 해가 없었던 거짓 주장에

- 대해 사죄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2. 미군당국은 한국계 군무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보복조치를 철회하라!
  3. 미군당국은 독극물 무단 방류를 직접 지시한 부소장 맥팔런을 즉각 해임하고,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을 이미 보고 받고도 묵과한 34지원단 사령관 역시 해임해야 한다!
  4.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맥팔런을 빠른 시일내에 소환하여 사법처리하라!
  5. 한미 양국은 차기 SOFA 개정협상 일자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짓고, 환경조항 신설,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 보장 등 SOFA 전면개정에 나서라!

## 제5절 언론에 비친 SOFA

### 1. 신문기사

#### 1) 「한국속 미국」 불평등 완화 2년만에 합의본 한미 행협 손질

(중앙일보 1991-01-04 03면 : 이재학기자)

▶ 미군 이삿짐 반입 때 세관검사 / 일·독·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  
88년 12월부터 우리 정부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이 협정의 불평등 독소조항을 대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군의 시설·토지수용의 필요성 여부를 1년마다 재검토, 완전반환도 가능하게 했으며 미 군사우체국을 통한 이산화물 등에 대하여 필요시 1백%까지 세관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 등은 중요한 진전이다.

SOFA는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공한(일명 브라운각서) 및 이들 4개 문서의 이행에 관한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있다.

이번의 개정작업은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공한을 폐지하고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의 이행에 관한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의



로 이루어졌다.

형사재판권의 경우 원래 본 협정은 미군공동체 자체내의 범죄나 공무중의 범법사항 이외에는 우리정부에 1차적인 관할권을 모두 주고 있었다.

그러나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브라운 각서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와 살인·강도·강간일지라도 15일 이내에 법무장관이 미군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1차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서면통보 절차를 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사재판권이 자동 포기된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으로 한미 양국의 재판권행사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1차 재판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미측이 서면으로 재판권포기를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당국은 이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으며 나토국가나 일본의 경우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만족해하는 편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중」이었느냐의 최종판단을 일본측 법관이 하게 돼 있고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도 가능하다.

또 독일의 경우는 현행범인 경우 구속영장 없이 구금·체포가 가능하며 미군시설과 지역 안에서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미군의 동의 없이 무기를 압수하거나 구금이 가능케 돼있다. SOFA의 개정은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시설과 토지」에 관한 부분이다.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 조항에 근거, 현재 총 7천9백만 평(전 국토의 0.3%)의 1백14개 기지 및 부대시설구역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 동안 미국이 시설 및 토지를 반환해도 재사용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이 언제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지 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완전반환이 가능토록 됐으며 제공된 토지와 시설의 계속 사용 필요성 여부도 연례적으로 검토, 과도한 사용의 시정을 가능하도록 한 점등은 큰 진전이다.

물론 독일이나 필리핀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 필요할 경우 몰수·사용해제 또는 미측의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이밖에 미 군사우체국을 통한 군인·군속·가족의 반입물품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개인별기록을 관리,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토록 한 점은 이들의 밀수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한미 양국이 미군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노사분쟁 조정에 관해 방위산업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냉각기간 70일등의 미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의 개정합의를 「상호존중과 우호에 바탕하여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미 관계의 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소한 90년의 시점에서 시정해야할 불평등은 대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은 원칙의 문제라기 보다 운영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 피고인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미군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금시설(샤워·침대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에게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다고 한다.

또 SOFA 담당검사가 지칭마다 1명씩 있기는 하나 전담검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며 세관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새로운 투자도

필요하다.

어쨌든 이번 SOFA의 개정은 양국 국민들간의 민감한 감정적 마찰을 제거하는 것이 건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북방정책과 탈냉전의 국제조류가 우리의 안보환경을 크게 바꾸었으며 그에 따라 「미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구분개정 전, 개정 후

시설과 토 필요성을 미측이 일 연 1회 한미 합동으로 반지 반환 방 결 정 후 재사용 환 필요성 검토. 완전 반환권 가진 채 반환 가능 통관과 관·군속·가족의 이사화물 필요시 100% 세관검사. 세 물에 대한 세관검 사 군인·군속·가족의 반입 면제 화물 기록문서의 관리 노사분쟁 미군중 사 근로자의 해고등 징계조치 등의 개인 조정 근로조건을 미군이 소청사 건을 취급할 한미 공 자체 설정 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형사재판 형사재 판관할권 자동 자동포기조항 삭제, 한국의 관할권 포기 및 재판권 행 1차 재판관할권 인정. 형사대상 사건 범위의 사대상 사건의 범위제한 규제한. 공무증명서 정 삭제. 공무증명서 이외에 대한 예외제기 제기 가능. 피의자 신병인도 불가. 재판진행중 가능. 신병인도전 1차 수 피의자신병 미측 확 사권도 확보. 질병유입 AIDS등 전염병 모든 입국항에서 미군·군속 방지 국내유입 및 확대방·가족은 분기별로 질병발생지를 위한 관리체계 여부 확인서를 보사부에 제출 없음. 감염자 발생 등의 동향정보 신속 제공

## 2) 한 - 미 행정협정 개정 서명 의의

(조선일보 1991-01-05 03면 : 김승영 기자)

▶ 「불평등」 대폭 시정... 「상호존중」 진전/문제조항 2년 교섭... 25년 만에 손질/독·일과의 협정 수준엔 아직 못 미쳐/정당한 권리행사 위한 후속준비가 과제

4일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합의 서명은 불평등한 양국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진전된 「결실」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그간의 문제조항들을 대부분 시정함으로써 양국간 상호존중에 바탕한 협력단계를 다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6년 체결된 SOFA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던 시절의 양국 관계를 반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진 조항들이 적지 않았다.

이후 우리 국력신장과 함께 불평등조항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 88년 12월 한미SOFA재검토회의를 시작,작년말까지 교섭을 계속해왔다.

SOFA는 본 협정과 ▲협정 이행에 관한 합의 의사록 ▲합의 양해사항 ▲교환 공한 등 3가지 부속문서, 그리고 이들 문서들의 이행에 관한 한 - 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합의 양해사항과 교환 공한은 본 협정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첨부된 것으로 대부분 불평등조항이 이 두 문서에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 합의는 바로 이 두 문서를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합의사항을 담아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

이상옥 외무장관과 그레그 주한 미 대사가 서명한 SOFA 개정조항은 ▲형사재판관할권 ▲시설 및 토지의 반환 ▲노사분쟁 조정 ▲질병 유입 방지 ▲통관 및 관세 ▲현지조달제도 ▲골프장 및 PX 출입통제 ▲농산물 검역 등 8개 조항이다.

2년여의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사항은 형사재판권 관할문제가 걸린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22조 교환 공한).

이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특정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정, 사건발생 15일 이내에 법무장관 명의로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자동으로 미측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 게다가 미군 범죄자의 「공무」 수행여부도 법관이 아닌 미군 장성이 판정하도록 돼 있고, 국가안전 등에 관한 중요 범죄가 아닌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을 구금할 수도 없었다.

이번 개정합의가 이 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을 삭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원칙을 확립한 것은 양국간 감정적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설 및 토지의 반환」(제2조)에 관한 합의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 조항에 근거, 현재 총 7천9백만 평(전 국토의 0.3%)에 이르는 1백14개 기지 및 부대시설 - 구역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간 이들 시설 및 토지의 적절한 반환절차가 없었을 뿐 아니라 미측이 이들을 일단 반환하더라도 재사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측으로서 미군이 언제 다시 사용을 요구할지 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나 토지의 완전반환이 가능해졌으며, 제공된 토지와 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지도 매년 양국 합동으로 검토, 파다사용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노사분쟁 조정에서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노동법 적용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 가시적 성과다. 또 해고 - 징계조치 등과 관련한 개인 소청사건은 「한미공동심사특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도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그간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미군이 자체내규나 인사규정을 적용, 일방적으로 결정해 많은 문제를 파생시켜왔던 것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기업 노조연맹 등이 줄곧 제기해온 쟁의 냉각기간 단축문제가 결국 미측 안대로 70일로(국내사업체 10~15일) 확정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주한미군 역시 군대라는 특수조직이고, 한국군내 민간인이나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행동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미군측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검역제도 강화를 통한 에이즈 등 질병 유입을 방지키로 한 것이나, 통관업무나 내국인 PX 사용규정을 강화한 점등도 그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 일부 서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서독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체결한 SOFA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미군이 한반도 안정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측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일단 불균형이 해소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 동안 미군 관련업무 처리에서는 영어능력을 갖춘 실무인력 부족, 시설 미비 등으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SOFA 전담검사나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미군 피의자 유치시설도 수원교도소내 8개실뿐인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협정내용상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3) 한-미 행정협정 개정 서명 의의; 불평등 대폭 시정 상호존중  
진전 ; 문제조항 2년 교섭 25년 만에 손질;독 일과의 협정 수  
준엔 아직 못 미쳐 ; 정당한 권리행사 위한 후속준비가 과제

(조선일보 1991-01-05 : 김승영 기자)

4일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합의 서명은 불평등한 양국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진전된 결실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그간의 문제조항들을 대부분 시정함으로써 양국간 상호존중에 바탕한 협력단계를 다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6년 체결된 SOFA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던 시절의 양국 관계를 반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진 조항들이 적지 않았다.

이후 우리 국력신장과 함께 불평등조항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 88년 12월 한미sofa재검토회의를 시작, 작년말까지 교섭을 계속해왔다.

SOFA는 본 협정과 협정 이행에 관한 합의 의사록, 합의 양해사항 교환 공한 등 3가지 부속문서, 그리고 이들 문서들의 이행에 관한 한-미 합동 위 합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합의 양해사항과 교환 공한은 본 협정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첨부된 것으로 대부분 불평등조항이 이 두 문서에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합의는 바로 이 두 문서를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합의사항을 담아 합동 위 합의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

이상욱 외무장관과 그레그 주한 미 대사가 서명한 SOFA 개정조항은 형사재판관할권 시설 및 토지의 반환 노사분쟁 조정 질병 유입 방지 통관 및 관세 현지주달제도 골프장 및 PX 출입통제 농산물 검역 등 8개 조항이다.

2년여의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사항은 형사재판권 관할문제가 걸린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 (22조 교환 공한).

이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특정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정, 사건발생 15일 이내에 법무장관 명의로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자동으로 미측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 게다가 미군 범죄자의 공무 수행여부도 법관이 아닌 미군 장성이 판정하도록 돼 있고, 국가안전 등에 관한 중요 범죄가 아닌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을 구금할 수도 없었다.

이번 개정합의가 이 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을 삭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원칙을 확립한 것은 양국간 감정적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설 및 토지의 반환 (제2조)에 관한 합의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 조항에 근거, 현재 총 7천9백만 평 (전 국토의 0.3%)에 이르는 1백4개 기지 및 부대시설-구역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간 이들 시설 및 토지의 적절한 반환절차가 없었을 뿐 아니라 미측이 이들을 일단 반환하더라도 재사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측으로서는 미군이 언제 다시 사용을 요구할지 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나 토지의 완전반환이 가능해졌으며, 제공된 토지와 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지도 매년 양국 합동으로 검토, 과다사용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노사분쟁 조정에서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노동법 적용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 가시적 성과다. 또 해고-징계조치 등과 관련한 개인 소청사건은 한미공동심사특위 에서 다루도록 한 것도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그간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미군이 자체내규나 인사규정을 적용, 일방적으로 결정해 많은 문제를 파생시켜왔던 것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기업 노조연맹 등이 줄곧 제기해온 쟁의 냉각기간 단

축문제가 결국 미측 안대로 70일로(국내사업체 10~15일) 확정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주한미군 역시 군대라는 특수조직이고, 한국군내 민간인이나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행동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미군측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검역제도 강화를 통한 에이즈 등 질병 유입을 방지키로 한 것이나, 통관업무나 내국인 PX 사용규정을 강화한 점등도 그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 일부 서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서독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체결한 sofa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미군이 한반도 안정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측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일단 불균형이 해소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 동안 미군 관련업무 처리에서는 영어능력을 갖춘 실무인력 부족, 시설 미비 등으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sofa 전담검사나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미군 피의차 유치시설도 수원교도소내 8개실뿐인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협정내용상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4) SOFA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 50년 8) ; 불평등 조약 한미 인식 "깊은 골" ; 개정협상 제자리 30년전 독소조항 그대로 ; 재판권 행사율 2% 독은 53% ; "경미한 사고 대부분" 미선 평등 주장 ; 미-일도 개정합의;

(조선일보 1995-10-29 : 최 흡 기자)

#### [주요 문제조항]

- 22조5항-미 요청엔 미군피의자 미군인도
- 22조9항-미 정부대표 입회해야 진술인정
- 22조10항-미부대 도주한 범인 재판권 포기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어느 나라나 외국 군대가 주둔할 경우 체결하며 행정협정으로도 불린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 미국과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독일, 나토와 헝가리, 호주와 싱가포르, 미국과 이스라엘, 유엔과 크로아티아, 유엔과 보스니아, 영국과 케냐 등 전세계의 주둔군 지위협정은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협정(주둔군 지위협정)이 상호 평등에 바탕을 두고 체결됐느냐 하는 점은 상호 국력 및 문화의 차이, 역사적인 배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올 들어 지난 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미군들에 의한 한국인 폭행사건 등 한국인에 대한 미군범죄가 잇따르면서 한-미 행정협정 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한-미 행정협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심을 끄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최근 움직임. 지난 9월 오키나와에서 주일미군 병사에 의한 국교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일본 국민들의 미군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선야만)시 공원.

8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에 항의하는 오키나와(총승) 주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전후 5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전히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는 미군기지의 축소, 미-일지위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일본과 미국은 이에 따라 주일미군의 범죄처리 방법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압력에 직면한 미국은 일본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요원의 신병을 일본측에 조속히 인도하도록 명시하는 데 일단 원칙적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 감정도 일본처럼 미군 범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이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래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57년 미 군용열차에서 양담배를 훔치던 한국인 3명이 미군 사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건을 비롯, 풀베는 소녀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57년), 14세 소년을 폭행해 나무궤짝에 넣어 못질한 뒤 헬기에 실어나른 사건(58년), 나무꾼 2명의 옷을 벗겨 사살한 사건(62년) 등 끔찍한 미군범죄가 잇따랐으나 처벌은 커녕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 같은 불평등과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고, 66년 본 협정이 마무리됐다.

한-미 행정협정은 나토 및 미-일 행정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토협정과 비슷하다. 재판이 완결됐을 때 신병인도를 한다거나 sofa 협정이 미군을 비롯, 군속 및 친척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나토협정에 가깝다. 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주둔국 수사당국에 범인 면접을 허용하는 점도 나토와 같다.

#### 연 범죄발생 2천여건

그러나 행정협정 부속문서에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 포기권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미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미군에 대한 구속이나 재판을 할 수 없게 돼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3백9건(미군속 포함)이 발생해 10건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군속을 제외한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4.1%로 지난 91년의 1.5%에 비하면 두배 이상 늘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연평균 2천2백여 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권 행사율은 연평균 2%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미군의 국내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독일 53% 일본 32% 필리핀 2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 등 가벼운 사안까지도 미군범죄 통계에 포함시켜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강력 사건 위주로 통계를 잡아 재판권 행사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은 한국 관계당국 수중에 있는 미군 피의자를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당국에 인도토록 한 조항(22조5항) 범인이 체포된 뒤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은 진술은 유죄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 것(22조9항) 미군이 범행 후 미군부대안으로 도주할 경우 신병인도나 재판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것(22조10항) 등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본사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재판권 행사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 사법부가 밝힌 미군범죄는 모두 8백61건으로 이 가운데 65% 이상은 경미한 교통사고 등이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측은 또 지난해 26건의 강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 사법부는 이들 26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 모두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처벌 결과는 구속에서부터 벌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한국측 관계자들은 미군 구속수사 허용 미군 입회 하에서 증거 채택 철회 상소권 제한 폐지 군속 및 친척을 포함하는 협정 혜택 범위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측 관계자들은 특히 한-미 행정협정이 나토나 미-일 행정협정보다 미군의 특례를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어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군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22조5항이 한-미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우리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우리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배급자 변호사는 "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서 파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국은 재판권을 행사해야 할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의 1차 재판권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나토협정 등에 비해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협정 3항 역시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유리하게 돼 있어 시정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검찰 항소금지 불평등

동두천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강홍구 사무국장(29)은 "배상절차가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 비해 배상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최종 결정이 내려면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시간적 정신적 피해까지 입는다는 게 강국장의 주장이다.

정부도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같은 조항들의 문제점을 인식, 협정개정 추진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측에 행정협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안우만 법무장관도 지난 12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미행정협정을 최소한 현재의 미-일 협정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5월 미군 지하철 폭행사건 이후 거세게 일었던 sofa 개정논의는 현재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7월 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지금까지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체결된 지 30년 가까이 된 한-미 행정협정은 최근의 개정 움직임으로 이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으나 한-미 양국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장교는 "지난 66년 체결될 당시에 비해 현재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등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행정협정도 그에 걸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예/국민여론 한국과 정반대 "대조적"/재판권행사 조항 우리와 비슷/범인 신병인도 요구 거의 없어 "한국과 독일 양국의 행정협정(sofa)에는 조약 내용도, 운용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여론은 정반대다. 이 차이는 곧 대미인식의 차이이다."

최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미군 범죄와 sofa 개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한 언론이 내린 결론이다.

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7일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군 범죄 혐의자의 신병인도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로 돼 있는 점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독 양국은 비슷하지만, 한국에선 협정 개정요구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독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지난 59년 구서독시대에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나토군 지위협정(59년)을 맺었으며 61년 이에 대한 보조협정(본 협정)을 맺었다.

59년 협정에서는 미군병사 및 가족의 재산, 안전에 관련된 범죄와 공무중의 범죄를 제외한 기타 범죄는 독일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갖게 돼 있었지만 보조협정인 본 협정에서 독일은 살인, 강도 등의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했다.

또 피의자 인도를 요구하면 미국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지만 독일은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스파이, 테러 등 특정 사건에 한한다"고 축소해석하고 있다.

94년 1년 동안 경범죄를 포함, 독일 국내에서 약 1천여 건의 미군범죄

가 있었지만 독일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권의 행사가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해 국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이런 점이 정치문제화 된 적이 없다.

독일은 이 같은 이유를 동서독이 대치하던 냉전시대의 상황에서 미군의 존재는 점령군이라기 보다는 원군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 역시 남북대치 상황을 겪고 있었으므로 양국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독일의 한 법무담당자는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나 피의자 인도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형사 절차에 대한 양국의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마이니치신문은 제목을 통해 "대미 의식의 차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5) '소파' 개정 · 보안법 폐지운동 앞장 김원웅 의원

(한겨레신문 2000-07-16 : 최익림 기자)

최근 정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김원웅 의원(한나라 · 사진)이 있었다.

그는 지난 14일 여야가 대치국면에서 팽팽한 입씨름을 하던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점심시간에 여야 의원 40명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긴급의원간담회'를 열어 국회결의문 초안을 전격 채택하는데 '큰 몫' 노릇을 했다.

국가적 또는 민족적 대사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그의 설득에 여야를 '넘어서' 마련된 자리였다. 여기에는 상당수 중진들도 포함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록 국회가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달 초 개

개되는 소파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게 큰 수확"이라고 설명했다.

"소파문제는 지금까지 공론화 될 때마다 정부 쪽이 '반미감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욕적인 협상안과 태도를 보고도 국민들에게 반미감정을 품지 말라는 말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지요"

그는 결의안 채택에 대한 서명운동이 국회 과반수를 넘길 경우 곧바로 국회에 결의문 초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에는 의원회관에서 진보와 보수층 등 각계의 인사들을 두루 초청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자신은 이 법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지만, 워낙 첨예하게 맞선 상태인 만큼 반대쪽의 다양한 의견도 들춰내 이른바 '백화제방'식의 공론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광복군 출신인 부모를 빼 닮았는지 소파개정 문제에 관한 한 '민족주의'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 벗고 나선데 대한 그의 설명이다.

##### 6) '한 · 미 SOFA' 개정 '산 넘어 산'

(뉴스피플 정치/사회 2000-07-21 : 오일만기자)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앞길은 '첩첩 산중'에 비유된다. 내달 2일 중단 4년만에 한 · 미 양국이 SOFA 개정 협상에 착수하지만 곳곳이 암초투성이다.

SOFA는 지난 51년 6·25 와중에 졸속으로 체결, 67년 정식으로 발효돼 24년만인 지난 91년 1차 개정을 했다. 하지만 개정 당시부터 합의 의사록과 개정 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 · 미 SOFA'가 대표적 불평등 협정으로 지탄받는 만큼 각계 각층에서 '평등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



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 5월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SOFA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피할 수 없음을 감지할 수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를 보자. 미국정부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에 대해 '형 확정'에서 '기소 단계'로 앞당기는 우리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국의 법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미측은 ▲경미한 사건의 재판 관할권 포기 ▲피의자 대질 신문권 보장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의 조문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가운데 경미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 포기는 '주권'에 관한 문제라 국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측에 신병이 넘겨진 미군 피의자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송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조건은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미측이 ▲미군 부대 환경 오염문제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 보장 ▲미군부대 반입 농산물 검역문제 ▲지나친 관세 면제 등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정부가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를 해결한 뒤 나머지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다루자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정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포르말린) 방류 사실은 SOFA 내 환경조항이 전무한 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협상에서 반드시 환경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런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최근 ▲형확정 이후로 돼 있는 미군 피

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 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며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시키는 등 3개항의 관철을 지시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미 SOFA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쉽게 이해가 된다. 60년 체결된 '미·일 SOFA 협정'은 형사재판권 적용 대상을 미

군에 한정했다. 반면 한미 협정은 군속과 가족까지 포함돼 있고 가족범위에 '기타 친척'까지 포괄하는 등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12개국과 체결된 'NATO SOFA'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평등 조약으로 평가된다. 미군 및 군속·가족에 대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 관할권이 미군이 아닌, 주둔국에 있다. '환경'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한미협정과 달리 환경오염 제거비용의 부담과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규정을 두고 있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냉전질서를 전제로 맺어진 한미 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한미 SOFA'는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 7) 인천/경기-미군부대 이전요구 인간띠잇기 행사 열려

(동아일보 2000-10-02 24면 : 박정규기자)

인천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0년 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및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잇기 대회 추진본부' 회원과 시민 등 1000여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반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일명 캠프마켓) 4.3km를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두 시간 동안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새천년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형사관할권 적용대상 범위 축소 및 미군 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 관련 조항 삽입 등 SOFA의 13개 사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부대 조속 이전 △쓰레기장과 자동차폐처리장 우선 폐쇄 △부대 부분 개방 등을 요구했다. 오순부 공동대표(60)는 "부지 14만여평에 고작 미군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캠프마켓이 부평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해 도로개설을 막아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부대 내 쓰레기장과 자

동차 폐처리장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정문과 주변을 둘러싸고 풍선을 일제히 날려 보내 기지 이전의 희망을 나타내는 행사를 가진 뒤 해산했다.

## 8)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20년간 3129억원 경감

(동아일보 2000-10-03 02면 : 송인수기자)

주한미군은 전기요금을 낼 때 일반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을 적용키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80년부터 3129억원의 전기료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2일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80년7월 SOFA합동위원회 의결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기로 한 후 작년말까지 945만MWh를 사용했다. 이를 일반요금으로 환산하면 8160억원이나 주한미군은 산업요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61.7%인 5031억원만 납부했다.

이의원은, “일본 필리핀 독일 등은 자국 정부기관이나 자국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에 준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이와 달리 특혜를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 9) 美軍방류 폐유 치명적 환경호르몬 함유

(세계일보 2000-10-04 23면 : 이상현-이진수기자)

주한미군이 방류한 폐유에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

문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와 섬강 폐유 방류를 폭로한 녹색연합은 3일 “지난달 25일 밝힌 원주 이글기지에서 방류된 폐유에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인 PCB가 들어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현지 토양샘플 등으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변압기 절연유 등으로 사용되는 PCB는 인공 유기화합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며 거의 분해가 안돼 고농도로 몸안에 축적되는 내분비계교란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녹색연합은 1994년 변압기 과열로 인한 이글기지 기름유출 사고 때도 PCB가 다량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모든 주한미군기지에서 변압기 등에 PCB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미군기지들도 PCB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6개 주요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 11월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李東洙) 교수는 “PCB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축적성이 강해 오래전부터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물질”이라며 “만일 한강 등에 이 물질이 유입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정부기관을 통해 파악한 전국 미군기지 100곳의 분포현황(지도참조)을 공개하고 이들 기지를 연결하는 송유관 513km가 노후돼 있는데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기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앞으로 기지를 돌려받을 경우 8000여만평에 달하는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 약 450조원이나 필요하다”며 “복구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환경보호 의무규정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 현장진단 / 부평 미군부대 부분이전 하나?

(동아일보 2000-10-04 26면 : 박정규기자)

《최근 매향리 폭격장 이전문제와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등이 맞물리면서 인천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지역 2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00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및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 잇기 대회 추진본부' 소속 회원과 시민 등 1000여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부평 미군부대(일명 캠프마켓) 둘레 4.3km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두 시간 동안 벌이기도 했다》

### ▶ 부대현황

미 육군 8군 34지원단 소속인 부평 미군부대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14만253평(46만3646㎡)을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로서 자세한 시설과 인원은 공개돼 있지 않으나 내부에 창고, 제빵공장, 예차장, 폐가구처리 등의 폐품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자 공급 창고, 물자 재활용, 공병대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현재 기지 내에는 10명 미만의 상주 미군과 출퇴근하는 50여명의 한국인 군무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시민단체 입장

부평 미군기지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부대가 부평 한 가운데를 차지, 시가지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 부대 주변을 둘러싼 15~17층 높이의 고층아파트에서 부대 내부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이는 관계로 군사기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현 위치가 군사기지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추진본부 광경전 사무국장(40)은 “완전 이전이나 반환이 목표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에 부분이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5년부

터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온 '인천 시민회의' 이병길 사무차장(30)은 “이전은 또다른 이전 시비를 낳기 때문에 아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인천시입장 및 향후 전망

현행 SOFA 상 미군기지 이전 시 대체 부지마련과 이전에 드는 비용은 모두 원인 발생자인 인천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부대 전체의 완전 이전은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각종 창고용 건물이 기지 내에 가득차 있어 부지 축소도 힘들기 때문에 부분이전만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현재 한미 정부간에 진행 중인 SOFA 협상 결과에 따라 이 부대의 이전문제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11) 反美단체 7개..7일은 국민행동의 날

(국민일보 2000-10-06 27면 : 강영수기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과 매향리 미국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7개 단체는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해 7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매향리 미군폭격장과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등으로 미국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나 미군 당국의 성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SOFA 전면 개정과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미군 환경범죄 책임자 처벌,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만행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 역량

을 통일시키기 위해 오는 7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을 비롯, 울산 광주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역 집회에서는 참가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해 반미 퍼포먼스를 펼치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반미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민단체인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반대 네트워크는 회견에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에 반대하는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7일 집회에 참석해 미국 미사일방어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은 미국 NMD·TMD에 반대하는 전세계 16개국 시민단체들이 지정한 세계행동의 날로 전세계 63개 지역에서 항의집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 2. 칼럼 / 사실

### 1) '베제라 베제!' 난공불락 SOFA 협상

(주간동아 제244호 2000-7-27 : 김 담 기자)

피의자 재판 관할권 환경조합 신설 등 요구 ... 바꿀생각 없는 미국 '질질끌기'

개기월식이 일어난 음력 6월 보름날인 7월16일 미군 공군 폭격장으로 유명한 매항리에서는 이색적인 한-일 연대집회가 열렸다.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매항리-오키나와 보름달 한-일 연대집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행사였다. 이 행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이름의 행사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전쟁 반대, 미군기지 폐쇄, 미군범죄 근절을 바라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단은 이날 각각 매항리와 오키나와를 방문해 오후 6시부터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일간 미군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연대 투쟁을 선포했다.

이처럼 최근 매항리-오키나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뉴스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물론 뉴스의 진원은 미군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매항리 농성 폭격장 오폭 사건, 미국측의 일방적인 이른바 SOFA(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안 통보를 둘러싼 국민 감정의 악화, 독극물(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 사건 같은 일련의 주한미군 관련 불협화음 때문이다. 또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G-8, 즉 러시아를 포함한 서방 선진 8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잇단 성추행 및 뺑소니 사건 등으로 주일미군 문제가 뉴스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 미군기지 철폐 한-일 연대 시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주한미군 반대 움직임이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연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오키나와에서 열린 '민중의 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국제포럼'(Okinawa International Forum on People's Security·OIFPS)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의 저명한 반전-평화운동가 70여명이 참여한 OIFPS에서 이들은 '일본 나고(名護)시 헬리포트 건설 중단과 한국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첫번째 요구안으로 정한 결의문과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했다.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결의문은 이미 지난 5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오키나와 포럼에 다녀온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대표 문정현 신부)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매항리는 이제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뿐이 아니다. 재야단체인 전민특위는 매항리 폭격장 조사 및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조사단과 함께 순례(7월17~23일)에 나선다. 이들의 목표는 매항리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인의 생활터전과 삶을 황폐화하는 미군기지 문제'를 부각하고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을 처음 폭로한 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

-시민단체들은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7월20~26일) 회담장 앞에서 2만여명의 환경운동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반기지 평화민중대회'에 대표를 보내 독극물을 1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몰래 방류한 미군의 반인도적 측면과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제기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은 독극물 방류사건 등 미군이 야기한 일련의 환경 파괴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기구와 연대 조사활동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이처럼 '국제화'된 데는 미군측의 단일한 대응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현재 한미 현안으로 등장한 불협화음의 핵심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개정 문제다.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입법부의 동의 없이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체결되는 국제조약을 의미하는 행정협정의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흔히 SOFA를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부른다. 53년 10월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어조약의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전시(戰時)에 체결된 이른바 '대전협정', 즉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을 모체로 한 한미행정협정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최근에 문제된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만 해도 주한미군은 자체 독극물 폐기 규정에서 포름알데히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심각한 환경범죄가 벌어져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SOFA 규정에 환경 관련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91년 '상호주의' 원칙 아래 SOFA를 개정하면서 조항의 일부를 손질한 바 있다. 그러나 협정 이외의 합의 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

고 있어 전체적으로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재판관할권' 문제만 들고 나와 여론 악화

더구나 당시 협상은 미국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응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91년 1차 개정에서 한국측은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조항을 폐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 대신 미국측은 협상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을 통해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 등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관철시켰다. 결과적으로 1차 개정을 '개정' 아닌 '개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작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종래의 불평등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SOFA 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으나 여전히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다. 그러다 미국측이 지난 5월 말 보스워스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미국측 협상안을 전달하고 오는 8월2일부터 8차 협상을 재개하자고 통보했다. 그런데 미국측 협상안이 7월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 일부 공개됨으로써 여론은 더 악화되었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이날 미국측 협상안에 대해 비공개로 전제로 브리핑했다. 그러나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협상 주체인 외통부의 처지는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비공개 파기를 선언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김원웅 의원에 따르면 미국 개정안에는 그동안 6년째 지연되고 있는 소파 개정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피의자 재판관할권 △환경조항 신설 △미군부대 한국인 노무자 권익 △동식물 검역 △미군 피엑스 및 골프장 출입 통제 문제 중에서 오직 재판관할권 문제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관할권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측은 피의자 인도시점을 형 확정단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조건으로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

다. 미군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잦은 범죄 유형을 비롯해 폭행, 지하철 성추행 등도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해 사실상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빼고는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 범죄의 죄목별 비율은 80년대 초반에는 폭력이 30%로 가장 높았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이 급증해 90년대에는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98년의 경우 전체 518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276건으로 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13건으로 2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85건으로 16.4%였다(표 참조).

게다가 김원웅 의원에 따르면 미국측 협상안은 “피의자의 법적 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피의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한국이 거부할 때는 소파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부대 조건을 덧붙이고 있어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이는 결국 일종의 사면권을 달라는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사면권도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행사하는 데 미추어 초법적인 발상이며 결국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방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도 “미국의 이런 요구는 우리 정부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범죄 이외에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91년 SOFA 개정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 미국, ‘이차의 유리한 협정’ 버티기

최근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개정안에 환경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미국측이 협상안에 반영조치 안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다. 더구나 미군측은 이미 96년 9월 7차 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문안까지 작성한 바 있다. 또 주한미군은 1992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해외에 주둔하는 자국군이 지켜야 할 환경지침서(OEBDG)를 적용받고 있다. 이 지침서에는 대기오염 식수 폐수 유해물질 자연자원 석면 납 오염 관리 등 19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환

경지침이 들어 있다.

이한동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현재 형 확정 이후로 돼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 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며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시키는 등 세 가지만은 꼭 관철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환경, 노무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은 채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단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포함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 협상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여론이 조성된 지난 91년 1차 개정 때처럼 가능한 한 협상을 질질 끌면서 협상에 유리한 시기를 엿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언이 있지만 근대 국제관계의 법원리는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둘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헌병’을 자처하는 미국이 SOFA 개정협상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옛장수 맘대로’인 셈이다.

## 2) 주미대사의 경솔한 발언

(한국일보 사설/칼럼 2000-9-23)

양성철 주미대사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차 일시 귀국했던 양 대사가 코리아 타임스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익과는 동떨어지는 발언으로 말썽을 빚었다.

발언의 내용은 그가 우리나라의 주미대사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상체를 벗어났다. 그가 언급했다는 내용은 민감하기 이를데 없는 다음 두 가지 사안이다.

우선 그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미군 지휘관이 사살을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무리 사건이라고는 해도 주미대사라는 주요 공직자의 견해는 곧 우리 정부의 견해로 오해되기 쉽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피해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생생하게 사건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

그는 “희생자의 보상을 포함한 법적인 접근법으로는 상황이 복잡해지니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또한 무슨 해괴한 말인가. 법적인 해결책 말고 또 다른 해결방안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나 이 문제는 주미대사가 한가롭게 언급해야 할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노근리 문제만 해도 이 사건을 특종보도한 AP통신은 세계적 권위가 있는 풀리처 상을 수상했다. 비록 반세기전 전란중의 불행한 일이었지만 미국의 양심은 이를 파헤쳤다. 그럼에도 주미대사란 사람은 ‘우발적 사건’ 운운 하면서 마치 미국시민권자가 자국입장을 강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양 대사는 또 SOFA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정부가 환경·노동·검역문제 등 이른바 ‘트랙II 이슈’를 삽입하려 하고 있으나 불가능할 경우 한미 방위조약 부속문서로 넣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양 대사가 한미 방위조약과 SOFA의 상·하위 개념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SOFA의 근거는 한미 방위조약인데 SOFA협상이 잘 안된다고 상위 개념인 한미 방위조약 부속문서에 어떻게 넣는다는 것인지 양 대사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외교부의 반응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이 두 사안이 주미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시귀국한 대사가 경솔하게 얘기할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질시비까지 낳고 있는 주미대사에 대해 외교부는 감싸려고만 말고 따끔한 주의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3) 양 주미대사, SOFA-노근리 발언 유감 표명

(세계일보 2000-09-27 05면 : 워싱턴=국기연특파원)

미군에 의한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양성철(梁性喆) 주미 대사가 25일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여전히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다.

양 대사가 21일자 영문 일간지 코리아 타임스와의 회견 내용중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며 노근리 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성격 규정을 한 내용이다. 또 하나는 SOFA 개정 방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경,노동,검역 문제를 SOFA 조항에 넣으려 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문서에 넣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들 관련 조항을 SOFA 개정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 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근리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국지적인 사건’(isolated incident)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대사는 “당시 미군이 한국 양민을 계획적-조직적으로 학살하려 온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노근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미군의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식으로 사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대사는 또 이날 “5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 증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다시 주장했다. 이것 역시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양 대사는 SOFA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든 것일 뿐 한미방위조약 부속문서로 넣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양 대사는 “코리아 타임스 회견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어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원인과 사실이야 어떻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4) [특파원리포트]SOFA개정 냉랭한 미국

(세계일보 2000-09-28 05면 :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불평등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文正鉉) 신부를 비롯한 한국 시민단체 대표 5명이 워싱턴을 방문해 고군분투했다. 이들은 20일 이곳에 도착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 상하원 의원 면담에 이어 26일 국무부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문 신부는 "미국에 와서 한마디로 절벽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한국에서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누구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워싱턴 시내 아시아-태평양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측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한 미국기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해빙 무드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됐기 때문에 한국이 SOFA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다른 미국측 인사는 "SOFA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 신부 등이 폴 웰스턴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을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을 뿐이라고 문 신부가 전했다. 문 신부 등 대표단의 행정부측 책임자 면담은 불발에 그쳤다. 백악관과 국무부에 면담 신청서를 발송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또다시 면담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면담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무부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외로운 외침을 남기고 워싱턴을 떠났다. 이제 한국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미국을 움직여야 할 차례이다.

#### 5) SOFA 개정 "실속 챙기는 협상 돼야"

주간한국 2000-7-26 : 송용희 주간한국부 기자

##### 8월초 개정협상, 감정 배제한 냉정한 자세 필요

"이제 미국도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7월23일 임기를 마치고 출국한 주한 미국대사관 크리스텐슨 부대사가 몇몇 기자들과 가진 송별회식 자리에서 한 말이다. 전라도 사투리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등 미국무부내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크리스텐슨 부대사의 이 말에는 매항리사격장 사건을 시작으로 미8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에 이르기까지 최근 우려스러울 정도로 악화하는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측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

미국이 한국을 내려다 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한국민의 태도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자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며 북한과 중국 등 공산세력을 물리쳐주었고 50년간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시켜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미국으로서 최근 한국민의 태도 변화가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인의 서운함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감정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경실련은 한미 행정협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여야 의원 61명은 한미 행정협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 때문인지 주한미군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김대중 대통령도 LA타임즈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한미 행정협정에 상당히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